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”를 “3.5센티미터 세로 4.5센티미터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면허 연월일”을 “면허 발급 연월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”를 “3.5센티미터 세로 4.5센티미터”로 한다.

제14조의8제2항제1호 중 “자격 연월일”을 “자격 발급 연월일”로 한다.

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”를 “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제1항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 외에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.

별표 1의2 제1호가목 중 “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”을 “제7호나목

전문임기제공무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면허증의 발급) ① 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3. 사진(응시원서와 같은 원판으로서 가로 <u>3센티미터</u> 세로 <u>4센티미터</u> 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) 2장 ②·③ (생략)	제2조(면허증의 발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3.5센티미터</u> 세로 <u>4.5센티미터</u>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(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) ① (생략) ② 법 제6조에 따른 면허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면허번호 및 <u>면허 연월일</u> 2. ~ 7. (생략)	제3조(면허증 및 면허대장 등록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----- <u>면허 발급 연월일</u> 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면허증의 재발급 등) 제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증	제4조(면허증의 재발급 등) ----- ----- ----- -----

을 재발급받거나 법 제32조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잃어버린 경우: 별지 제3호서식의 분실 경위서와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. 이하 이 조 및 제5조제3항에서 같다) 1장

2. ~ 4. (생략)

제14조의8(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) ① (생략)

②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격번호 및 자격 연월일

2. ~ 5. (생략)

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 ① (생략)

-----.

1. -----

-- 3.5센티미터 세로 4.5센티미터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8(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자격 발급 연월일

2. ~ 5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의3(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

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진료 비용을 게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.

1.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

2.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.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.

<신 설>

음)

② -----
----- 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여야 ---.

<삭 제>

<삭 제>

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제1항의 사항을 제2항의 방법 외에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

	<u>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</u> <u>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</u> <u>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.</u>
--	--